

기간제법 시행 효과

2015년 1월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

전화: 02-393-1457 팩스: 02-393-4449

www.ksli.org www.facebook.com/ksiedit

기간제법 시행 효과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통계청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20차례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를 결합해 하나의 합동 자료(pooled data)를 구축한 뒤, 인적 속성(성, 혼인, 연령, 학력)과 사업체 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유무) 및 경기변동(실업률)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간제법 시행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 근로는 3.9%p 감소했고, 한시근로(기간제 근로 포함)는 4.7%p 감소했다. 파견용역근로는 1.6%p 증가했고, 비정규직 전체는 4.9%p 감소했다.

노동부 사업체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규직 전환율은 2010년 21.0%에서 2014년 3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정규직 전환율이 2010년 20.9%에서 2014년 41.7%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데 비해, 300인 이상 사업체는 19~22%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300인 미만 사업체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1/3이 계약종료 되는데 비해, 300인 이상 사업체는 2/3가 계약종료 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고용구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기간제 사용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해서 기간제법을 사문화 시키려 할 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전환' 원칙을 민간부문 대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지난 해 말 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사용기간 한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는 기간제법을 시행한지 2년 되던 2009년 '백만 고용대란설'을 퍼뜨리며 추진하다 실패했던 안을 재탕한 것으로, 또 다시 소모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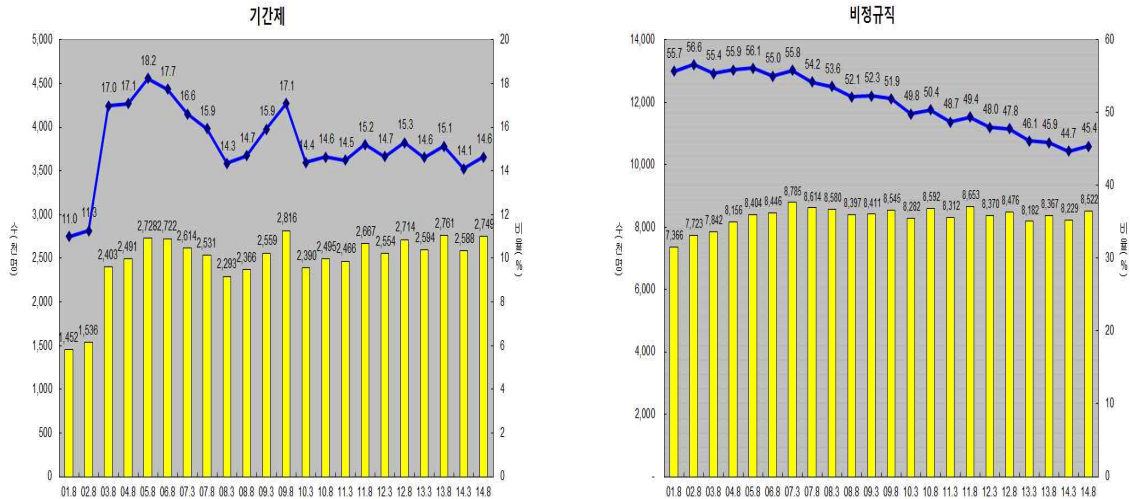
기간제법을 시행한 지도 벌써 8년 되었다. 2009년 '백만 고용대란설'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때는 기간제법 시행 효과를 분석한 글이 있었지만, 그 뒤로는 기간제법 시행효과를 분석한 글을 찾아볼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기간제와 비정규직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뒤, 고용구조 개선효과와 정규직 전환율을 분석하도록 한다.

2. 연도별 추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기간제 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 8월 145만 명(1.0%)에서 2005년 8월 273만 명(18.2%)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기간제법 시행에 힘입어 2008년 3월에는 229만 명(14.3%)으로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시한 희망근로 때문에 2009년 8월에는 282만 명(17.1%)으로 늘어났지만, 2010년 3월 239만 명(14.4%)에서 2014년 8월 275만 명(14.6%)으로 14~15%대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818~865만 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기간제법 시행 직후인 2007년 8월 54.2%를 시작으로 2014년 3월 44.7%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4년 8월에는 45.4%로 조금 증가했다(<그림1> 참조).

<그림1> 기간제와 비정규직 규모 추이



3. 고용구조 개선효과

1) 통계청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매년 8월, 2007년 이후는 매년 3월과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20차례 실시한 원 자료를 결합해 하나의 합동 자료(pooled data)

를 구축한 뒤, 인적 속성(성, 혼인, 연령, 학력)과 사업체 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 유무) 및 경기변동(실업률)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간제법 시행(2007년 7월 이후)과 연도 더미를 설명변수로 하여 기간제법 시행효과를 합동 회귀분석 한다.¹⁾ 회귀분석 결과는 <표1>, <표2>와 같다.

<표1> 기간제법 시행 효과 회귀분석 결과1 (2003-2014년 pooled OLS)

	(모형1) 기간제 비율			(모형2) 한시근로 비율			(모형3) 파견용역근로비율			(모형4) 비정규직 비율		
여성	2.861	0.000	***	4.017	0.000	***	1.420	0.000	***	12.559	0.000	***
미혼	1.890	0.000	***	2.260	0.000	***	0.923	0.000	***	4.951	0.000	***
사별	-0.066	0.835		-0.429	0.234		-2.201	0.000	***	-1.158	0.000	***
이혼	0.415	0.145		1.041	0.002	**	-1.040	0.000	***	7.455	0.000	***
연령	-1.740	0.000	***	-2.063	0.000	***	-0.274	0.000	***	-1.354	0.000	***
연령제곱	0.022	0.000	***	0.025	0.000	***	0.005	0.000	***	0.017	0.000	***
고졸	-1.552	0.000	***	-2.631	0.000	***	-0.206	0.124		-5.501	0.000	***
전문대졸	-2.018	0.000	***	-4.528	0.000	***	-0.096	0.531		-13.616	0.000	***
대졸이상	-3.667	0.000	***	-5.285	0.000	***	-1.096	0.000	***	-13.582	0.000	***
재학휴학	4.571	0.000	***	10.642	0.000	***	-0.108	0.601		7.664	0.000	***
기타재화생산	10.791	0.000	***	9.690	0.000	***	8.292	0.000	***	22.513	0.000	***
생산자서비스업	12.041	0.000	***	11.371	0.000	***	14.539	0.000	***	17.885	0.000	***
유통서비스업	4.900	0.000	***	5.581	0.000	***	1.166	0.000	***	10.301	0.000	***
개인서비스업	5.834	0.000	***	6.722	0.000	***	0.641	0.000	***	13.331	0.000	***
사회서비스업	17.837	0.000	***	16.458	0.000	***	1.085	0.000	***	15.000	0.000	***
사무직	-0.951	0.000	***	-1.200	0.000	***	-1.231	0.000	***	-4.885	0.000	***
판매서비스직	-2.010	0.000	***	2.099	0.000	***	2.236	0.000	***	25.312	0.000	***
생산직	2.286	0.000	***	3.500	0.000	***	2.429	0.000	***	15.713	0.000	***
단순노무직	10.092	0.000	***	13.702	0.000	***	11.388	0.000	***	32.692	0.000	***
5-9인	2.670	0.000	***	0.346	0.104		1.210	0.000	***	-11.150	0.000	***
10-29인	7.545	0.000	***	3.142	0.000	***	2.634	0.000	***	-18.994	0.000	***
30-99인	8.809	0.000	***	3.063	0.000	***	3.445	0.000	***	-24.986	0.000	***
100-299인	8.811	0.000	***	2.980	0.000	***	2.917	0.000	***	-29.674	0.000	***
300인이상	6.631	0.000	***	0.798	0.002	**	2.789	0.000	***	-31.167	0.000	***
노조유	-0.683	0.000	***	-1.706	0.000	***	-1.450	0.000	***	-11.822	0.000	***
기간제법시행	-3.898	0.000	***	-4.721	0.000	***	1.597	0.000	***	-4.858	0.000	***
실업률	-0.631	0.000	***	-0.445	0.007	**	0.190	0.019	*	0.519	0.003	**
상수	37.633	0.000	***	52.416	0.000	***	-3.844	0.000	***	74.231	0.000	***
관측치	520,086			520,086			520,086			520,086		
모형의 설명력	0.072			0.080			0.138			0.37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3년 8월~2014년 8월) 원자료

주: 남성, 기혼, 중졸이하, 제조업, 관리전문직, 5인 미만, 노조무, 기간제법 시행 전을 기준변수로 했을 때 결과임.

1) 좀 더 엄밀한 분석은 이중차감법을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 패널분석이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가가 계속 변화하고 통계청이 ID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패널데이터 구축과 고정효과 모형 패널분석이 불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차선책으로 합동 자료(pooled data)를 구축한 뒤 합동 회귀분석했다.

<표2> 기간제법 시행 효과 합동 회귀분석 결과 (2003-2014년 pooled OLS)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기간제 비율			한시근로 비율			파견용역근로 비율			비정규직 비율		
여성	2.830	0.000	***	3.955	0.000	***	1.440	0.000	***	12.511	0.000	***
미혼	1.981	0.000	***	2.427	0.000	***	0.894	0.000	***	5.194	0.000	***
사별	-0.166	0.603		-0.624	0.083		-2.143	0.000	***	-1.363	0.000	***
이혼	0.455	0.110		1.132	0.001	***	-1.083	0.000	***	7.591	0.000	***
연령	-1.732	0.000	***	-2.052	0.000	***	-0.280	0.000	***	-1.339	0.000	***
연령제곱	0.022	0.000	***	0.025	0.000	***	0.005	0.000	***	0.017	0.000	***
고졸	-1.423	0.000	***	-2.385	0.000	***	-0.239	0.075		-5.124	0.000	***
전문대졸	-1.774	0.000	***	-4.068	0.000	***	-0.174	0.258		-12.937	0.000	***
대졸이상	-3.413	0.000	***	-4.804	0.000	***	-1.169	0.000	***	-12.879	0.000	***
재학휴학	4.792	0.000	***	11.070	0.000	***	-0.174	0.401		8.296	0.000	***
기타재화생산	10.487	0.000	***	9.103	0.000	***	8.408	0.000	***	21.812	0.000	***
생산자서비스업	12.056	0.000	***	11.401	0.000	***	14.521	0.000	***	17.910	0.000	***
유통서비스업	4.995	0.000	***	5.764	0.000	***	1.110	0.000	***	10.501	0.000	***
개인서비스업	5.786	0.000	***	6.627	0.000	***	0.648	0.000	***	13.211	0.000	***
사회서비스업	18.291	0.000	***	17.338	0.000	***	0.870	0.000	***	16.000	0.000	***
사무직	-0.813	0.000	***	-0.935	0.000	***	-1.282	0.000	***	-4.558	0.000	***
판매서비스직	-1.906	0.000	***	2.302	0.000	***	2.199	0.000	***	25.575	0.000	***
생산직	2.481	0.000	***	3.875	0.000	***	2.352	0.000	***	16.183	0.000	***
단순노무직	10.251	0.000	***	13.998	0.000	***	11.311	0.000	***	33.033	0.000	***
5-9인	2.692	0.000	***	0.387	0.069		1.203	0.000	***	-11.094	0.000	***
10-29인	7.543	0.000	***	3.137	0.000	***	2.631	0.000	***	-19.013	0.000	***
30-99인	8.779	0.000	***	3.001	0.000	***	3.454	0.000	***	-25.076	0.000	***
100-299인	8.794	0.000	***	2.945	0.000	***	2.919	0.000	***	-29.731	0.000	***
300인이상	6.592	0.000	***	0.732	0.005	***	2.805	0.000	***	-31.248	0.000	***
노조유	-0.767	0.000	***	-1.866	0.000	***	-1.418	0.000	***	-11.994	0.000	***
2003년	-0.624	0.081		-1.398	0.000	***	-0.750	0.000	***	0.517	0.181	
2004년	-0.475	0.191		0.373	0.353		-0.275	0.134		1.433	0.000	***
2005년	0.615	0.097		2.229	0.000	***	-0.333	0.071		1.420	0.000	***
2007년	-1.509	0.000	***	-1.045	0.003	**	0.608	0.000	***	0.155	0.653	
2008년	-3.110	0.000	***	-1.906	0.000	***	0.847	0.000	***	-1.252	0.000	***
2009년	-2.962	0.000	***	-2.695	0.000	***	1.693	0.000	***	-1.564	0.000	***
2010년	-5.069	0.000	***	-5.378	0.000	***	1.687	0.000	***	-3.624	0.000	***
2011년	-4.822	0.000	***	-5.630	0.000	***	1.803	0.000	***	-4.519	0.000	***
2012년	-4.823	0.000	***	-5.818	0.000	***	1.924	0.000	***	-5.447	0.000	***
2013년	-5.005	0.000	***	-6.113	0.000	***	1.762	0.000	***	-7.044	0.000	***
2014년	-5.498	0.000	***	-7.442	0.000	***	1.320	0.000	***	-8.237	0.000	***
실업률	-0.365	0.035	*	-0.106	0.583		-0.005	0.963		0.384	0.060	
상수	36.477	0.000	***	50.152	0.000	***	-2.795	0.000	***	72.543	0.000	***
관측치	520.086			520.086			520.086			520.086		
모형의 설명력	0.073			0.082			0.139			0.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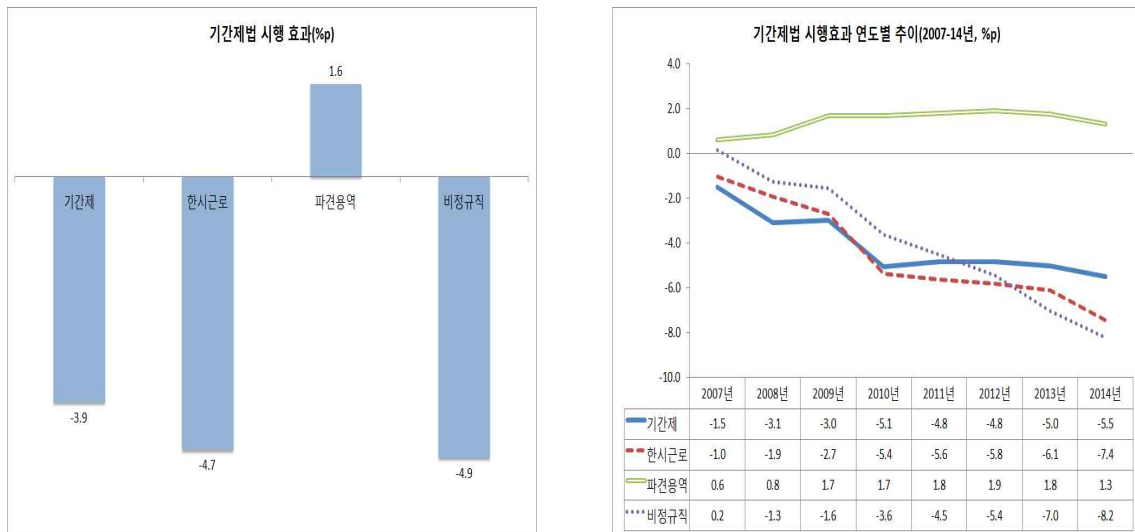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3년 8월~2014년 8월) 원자료

주: 남성, 기혼, 중졸이하, 제조업, 관리전문직, 5인미만, 노조 무, 2006년을 기준변수로 했을 때 결과임.

2) <표1>과 <그림2>에서 기간제법 시행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 근로는 3.9%p 감소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가 아닌 한시근로나 파견용역근로에도 영향을 미쳐, 한시근로(기간제 근로 포함)는 4.7%p 감소하고, 파견용역근로는 1.6%p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은 4.9%p 감소하고, 정규직은 4.9%p 증가했다.

<표1>에서 노조 효과를 살펴보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는 0.7%p 낮고, 한시근로는 1.7%p, 파견용역근로는 1.5%p 낮으며, 비정규직 전체로는 11.8%p 낮다. 이는 한국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도 한 가지 원인이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확대해야 비정규직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림2> 기간제법 시행 효과



3) <표2>와 <그림2>에서 기간제법 시행 효과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제법 시행 첫 해인 2007년에 기간제 근로는 1.5%p 감소했고, 2008~09년에는 3.0~3.1%p, 2010~13년에는 4.8~5.1%p, 2014년에는 5.5%p 감소했다. 기간제법 시행 효과는 2007~10년에 주로 발생했고,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한시근로(기간제 근로 포함)는 2007년 1.0%p 감소, 2008년 1.9%p 감소, 2009년 2.7% 감소하는 등, 기간제 근로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그러나 2010년(-5.4%p)부터 2014년(-7.4%p) 사이는 기간제 근로보다 감소폭이 클 뿐 아니라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간제법 시행 초기는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가 기간제가 아닌 한시근로자로 전환하는 부작용(풍선효과)이 있었지만, 2010년부터는 기간제가 아닌 한시근로자도 감

소했음을 말해준다.

셋째, 파견용역근로는 2007년 0.6%p, 2008년 0.8%p, 2009~13년 1.7~1.9%p 증가했다. 기간제법 시행 초기인 2007~9년에는 풍선효과로 파견용역근로가 증가했지만 2009년 이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넷째, 비정규직 전체적으로 2007년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지만, 2008년(-1.3%p)부터 2014년(-8.2%p) 사이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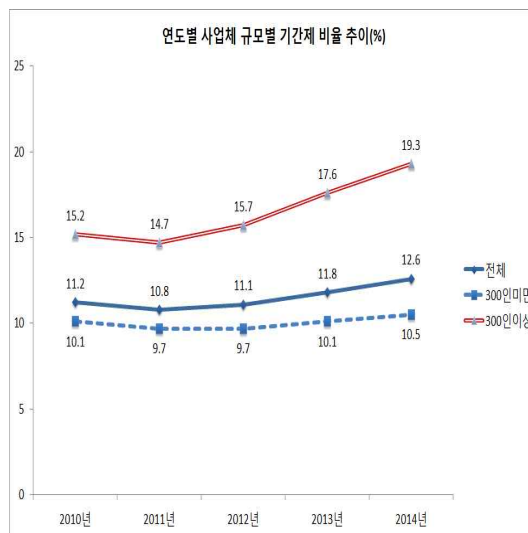
4. 정규직 전환율

1) 노동부가 2010년 4월부터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달 실시해 온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에서 기간제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기간제 비율은 변함이 없지만, 노동부 사업체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에서 기간제 비율은 2011년 10.8%에서 2014년 12.6%로 증가했다.

둘째, 300인 미만 사업체 기간제 비율은 2011년 9.7%에서 2014년 10.5%로 0.8%p 증가한데 비해, 300인 이상 사업체는 14.7%에서 19.3%로 4.6%p 증가했다. 이는 대기업이 기간제를 많이 사용할 뿐 아니라 기간제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3>과 <표3> 참조).

<그림3> 규모별 기간제 비율 추이



셋째, 근속기간 1년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사람은 매 달 7천 명(2013년)에서 9천 7백 명(2014년) 사이로 1만 명이 안 된다. 이는 과거 ‘백만 고용대란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거짓이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표3> 참조).

<표3> 사업체 규모 및 연도별 기간제 비율과 계약기간 종료자수 추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노동자수(명)	전체	11,446,671	11,949,367	12,179,492	12,401,604	12,625,204
	300인미만	9,017,009	9,289,904	9,235,997	9,490,967	9,637,048
	300인이상	2,429,661	2,659,463	2,943,495	2,910,638	2,988,157
기간제수(명)	전체	1,284,018	1,290,753	1,355,345	1,469,604	1,589,418
	300인미만	914,385	900,192	893,434	957,340	1,013,911
	300인이상	369,633	390,561	461,912	512,264	575,508
기간제비율(%)	전체	11.2	10.8	11.1	11.8	12.6
	300인미만	10.1	9.7	9.7	10.1	10.5
	300인이상	15.2	14.7	15.7	17.6	19.3
계약기간 종료자수(명)	전체	9,344	7,315	7,366	6,993	9,706
	300인미만	6,715	5,241	5,275	4,529	6,588
	300인이상	2,630	2,074	2,091	2,465	3,118
	1.5~2년 미만	4,106	3,362	3,239	3,090	3,323
	2년 이상	4,644	3,953	4,127	3,904	6,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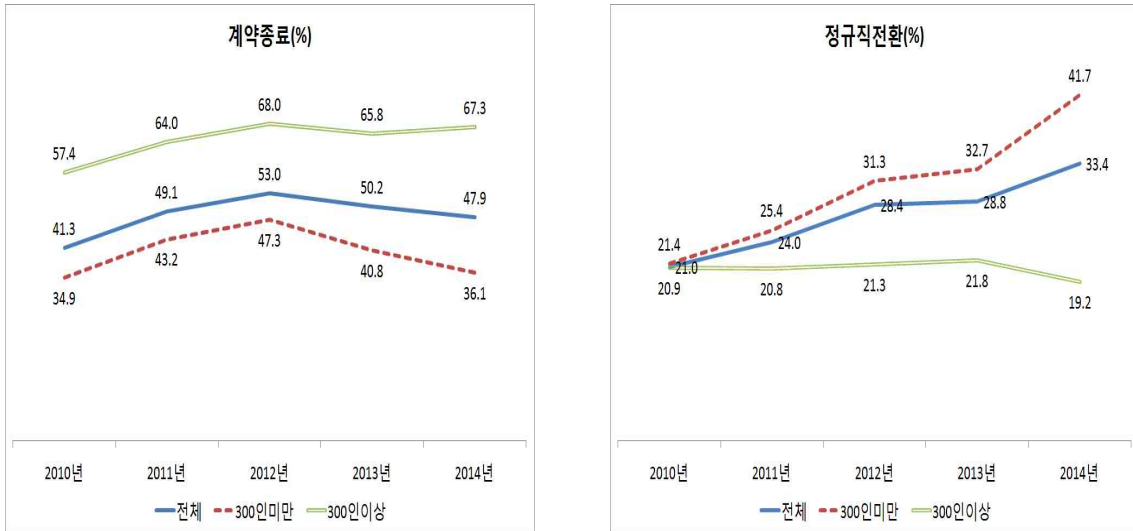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 사업체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2010년 4월~2014년 6월)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약종료, 정규직 전환, 계속고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약종료는 2010년 41.3%에서 2012년 53.0%로 증가하다가 2014년 47.9%로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계약종료가 2010년 34.9%에서 2012년 47.3%로 증가하다가 2014년 36.1%로 감소한데 비해, 300인 이상 사업체는 2010년 57.4%에서 2011~2014년 64~68%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1/3이 계약종료 되지만, 대기업에서는 2/3가 계약종료 되고 있다.

둘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규직 전환은 2010년 21.0%에서 2014년 3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정규직 전환이 2010년 20.9%에서 2014년 41.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300인 이상 사업체는 19.2~21.8%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4>와 <표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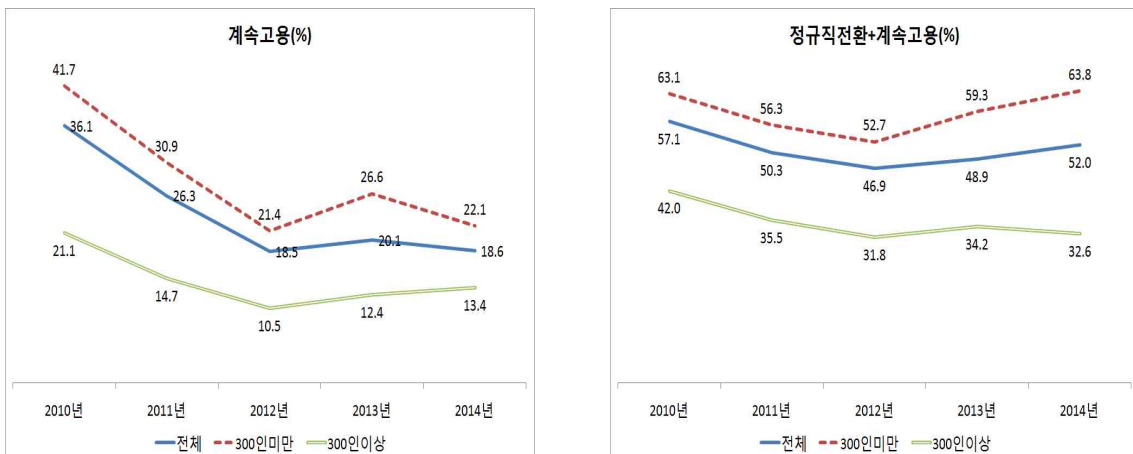
<그림4> 사업체 규모별 계약종료와 정규직 전환 추이



셋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속고용은 2010년 36.1%에서 2012년 18.5%로 감소한 뒤 2014년 18.6%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2010년 41.7%에서 2012년 21.4%로 감소한 뒤 2014년 22.1%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21.1%에서 10.5%로 감소한 뒤 13.4%로 조금 증가했다.

여기서 2010~12년 계속고용이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이 지나도 계약을 종료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탈법적으로 계속 사용하던 관행이 빠른 속도 개선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2012~14년에도 계속고용이 19~20%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법 적용대상 제외자(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등)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5>와 <표4> 참조).

<그림5> 사업체 규모별 계속고용과 '정규직 전환+계속고용' 추이



<표4>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 현황(단위:%)

구분	조치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근속 1.5년 이상)	계약종료	41.3	49.1	53.0	50.2	47.9	
	정규직전환	21.0	24.0	28.4	28.8	33.4	
	계속고용	36.1	26.3	18.5	20.1	18.6	
	기타(방침미정등)	1.6	0.6	0.1	0.0	0.1	
사업체 규모	300인미만	계약종료	34.9	43.2	47.3	40.8	36.1
		정규직전환	21.4	25.4	31.3	32.7	41.7
		계속고용	41.7	30.9	21.4	26.6	22.1
		기타(방침미정등)	1.9	0.6	0.0	0.0	0.1
	300인이상	계약종료	57.4	64.0	68.0	65.8	67.3
		정규직전환	20.9	20.8	21.3	21.8	19.2
		계속고용	21.1	14.7	10.5	12.4	13.4
		기타(방침미정등)	0.6	0.4	0.2	0.1	0.1
근속 기간	1.5~2년미만	계약종료	50.1	60.0	67.3	63.8	63.9
		정규직전환	20.4	17.7	22.6	19.4	21.5
		계속고용	25.8	21.1	10.0	16.8	14.5
		기타(방침미정등)	3.7	1.1	0.1	0.0	0.1
	2년이상	계약종료	30.6	39.5	41.8	39.2	39.2
		정규직전환	24.3	29.7	32.8	36.7	40.2
		계속고용	44.5	30.6	25.4	24.0	20.5
		기타(방침미정등)	0.7	0.2	0.0	0.0	0.1

자료: 노동부,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결과

3) 노동부 '사업체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달 근속 1년 6개월 이상 계약기간 만료자의 조치 현황을 조사하다가, 2014년부터는 3개월에 1회로 조사 횟수를 줄이면서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기간 만료자의 조치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2014년 6월 근속기간별 정규직 전환률이 '7.4%(1년 6개월 미만) → 19.9%(2년 미만) → 42.4%(2년 이상)'라며, 이를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근무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료를 잘못 인용한 것이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하려면, 근속기간 2년과 4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률을 비교해야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다수 포함된 근속기간 1년 6개월 미만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4) 기간제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규직 전환율을 50%라고 가정하자. 현행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 기간제 근로자 A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4년 동안 75%다(처음 2년 50% + 다음 2년 $50\% \times 50\% = 25\%$). 그러나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50%(처음 2년 0% + 다음 2년 50%)로 낮아진다.

한데 이것도 다른 조건에 변함이 없다고 가정할 때 얘기다. 만약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면, 기업주는 기간제 근로자 A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종료한 뒤, 기간제 근로자 B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높아진다. 이직수당 10%만 지급하면 정규직 전환 없이 기간제 근로를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규직 전환율은 지금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때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데 2년도 모자라 4년, 8년씩 기간제 근로 사용을 허용한다면 공약과도 배치된다. 2년을 넘어 4년, 8년씩 계속 사람이 필요한 일자리라면 그것이야말로 상시 지속적 일자리기 때문이다.